



2025년 인권경영 종합 보고서



[기획감사실(청렴감사팀)]

목 차

1. 인권경영 추진 개요	1
2. 인권경영체계 및 인권정책선언 보고	2
3. 인권영향평가 관련 보고	5
4. 구제절차 관련 보고	13
5. 인권경영 교육 관련 보고	18
6. 인권경영 종합평가	23
7. 행정사항	21

2025년 부천도시공사 인권경영 종합 보고

I 인권경영 추진 개요

1 추진배경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을 실천해야 하는 공기업·공공기관(공기업)은 인권경영보고서 공시 필수
- 공사 스스로 인권경영을 점검할 기회를 갖고,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보 공개를 통한 사회적 가치 추구

2 관련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2018. 9.)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적용 권고(2022. 7.)
- 공사 「인권경영규정」 제25조(인권영향평가) 적용

3 인권경영 보고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침에 따라 인권경영 보고에 담아야 하는 사항<발췌>”

가. 인권경영 추진 체계 및 인권정책선언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관련 규정의 목록과 주요 내용▶ 인권경영 책임자,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시▶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여부, 역할 및 구성 원칙▶ 국제인권기준 지지를 담은 인권정책선언 내용▶ 인권정책선언 제정 과정 및 확산 노력
나. 인권영향평가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연도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및 실시과정▶ 인권영향평가 결과로써 식별된 주요 인권 이슈▶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대응 계획 및
다. 구제절차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권침해 구제절차▶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해당연도 구제절차 운영성과(접수건수 및 내역)▶ 사건의 처리 절차와 결과, 미해결 사건의 향후 대책
라. 인권경영 교육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의 인권경영 교육체계(규정, 전담부서, 담당자)▶ 인권경영 교육 주제 선정 과정▶ 관리자 및 현원 대비 교육 참여율 등 교육 운영성과
마. 종합적 평가, 공개의 원칙 및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참여 등 종합적 평가 도출 과정▶ 인권경영 보고가 외부 이해관계자에 공개된 방법▶ 보고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평가 등 소통 결과

1

인권경영 체계 마련

단계별추진	내 용	기간
1. 인권경영 체계 구축	▶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 인권경영 정책 선언 및 공표	2018년 ~ 지속 추진
2. 인권영향평가 실시	▶ 매년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검토 ▶ 최고경영진 보고 및 평가 결과 대내·외 공유	2019년 ~ 지속 추진
3.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과제 이행 ▶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4. 구제절차 제공	▶ 구제절차 수립, 운영 및 전파	

2

인권경영 관련 규정 목록 및 주요 내용

규정 목록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인권경영규정의 목적
	제2조 정의	인권,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의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3조 고용상의 비차별	성별, 학력 등 비차별
	제4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단체교섭 권리 보장
	제5조 직원인권 보호	인격권, 휴식권 등 보호
	제6조 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금지
	제7조 산업안전보장	건강한 근무 여건 조성
	제8조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현지주민 인권침해 유의
	제9조 환경권 보장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제10조 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유의
	제11조 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 금지
	제12조 구제조치	인권침해 대응, 구제조치 이행
제3장 인권경영 체제	제13조 인권경영 현장	인권경영현장 선포 및 실천
	제14조 인권경영계획 수립	인권경영 실행전략 등 계획 수립
	제15조 인권경영 담당부서	인권경영 담당 부서 운영
	제16조 인권교육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제4장 인권경영 위원회	제17조 설치 및 기능	인권경영위원회 수행 기능
	제18조 구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
	제19조 소집 및 회의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제20조 수당 등	참석수당 등 지급
	제21조 의견청취	회의안건 관련자 의견 청취
	제22조 이익 충돌 회피	특정 안건의 이해관계자 배제
	제23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관련 비밀 누설 금지
	제24조 위원의 위촉 해지	품위 손상 등 해촉 사항

규정 목록		주요내용
제5장 인권영향 평가	제25조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6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7조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인권침해 신고 방법
	제28조 인권침해행위의 처리	인권침해행위 처리 방법
	제29조 신고의 취하	신고자의 신고 취하 방법
	제30조 인권침해행위의 종결	인권침해행위 종결 사유
	제31조 신고인의신분보장)	신고인의 신분보장
	제32조 인권침해여부에 관한 상담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과의 상담
	제33조 시정과 조치	인권침해 사항 시정 및 조치

3 인권경영 조직 운영 체계

구분	대상	내용
인권경영 최고 책임자	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총괄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
인권경영 위원회	내·외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자문 ▶ 인권경영 운영 실태 및 인권영향평가 심의
인권경영 담당부서	청렴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관련 업무 총괄 및 인권경영체계 운영 ▶ 책임자/담당자: 청렴감사팀장, 인권경영 담당자
인권지킴이	부서별 인권경영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행 조직 ▶ 부서별 인권경영 업무 전담, 교육, 캠페인 등 활동 추진

4 인권경영위원회

- **위원회 목적:**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 설치
- **위원회 역할:**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 인권경영 관련 계획·정책·제도에 대한 자문,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심의
 -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 실천사항 점검
- **구성원칙: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이해관계자의 권리 대변할 수 있는 자, 인권 증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 외부위원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 내부위원은 각 본부의 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 구성현황: 총 6명(외부 4명, 내부 3명)

구분	성명	분야	비고
외부위원 (4명)	박○○	노사전문가	공개채용
	최○○	시민운동가	
	김○○	교수	
	김○○	교수	
내부위원 (3명)	공 석	경영전략본부장	당연직
	이○○	도시개발본부장	
	김○○	시설운영본부장	

5 인권정책선언

□ 인권경영현장 내 국제기준 지지 의지 표명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하고 스스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인권보호와 증진, 공기업 전반의 인권경영 확산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신뢰받는 일류 공기업을 지향한다.”

□ 인권경영현장

Best <부천도시공사 인권경영 현장>

우리는 「시민행복과 도시발전의 BEST 파트너」라는 사명으로, 우리의 미션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나아가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하고 스스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인권보호와 증진, 공기업 전반의 인권경영 확산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신뢰받는 일류 공기업」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가치판단 기준으로서 『부천도시공사 인권경영현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아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아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성성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한다.

아나. 우리는 임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아나. 우리는 인천하고 일상적인 직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을 보장한다.

아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아용하지 않는다.

아나. 우리는 정부, 경기도, 부천시, 언론사, 업무계약자, 지역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아나. 우리는 사업이 영어야지는 현지 주민의 생명권,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부천시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공공사업에 앞장선다.

아나. 우리는 사업 실행에 있어서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아나. 우리는 ESG경영을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친환경 경영실천, 사회적 가치 창출, 청렴문화, 투명경영 강화에 노력한다.

이 같은 약속을 위해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보편적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4년 01월 02일

부천도시공사 사장 원명희

부천시 나눔과 사랑 청렴부문
보다 나은 Best+

□ 인권정책선언 제정과정 및 공개방식

- 인권경영현장 제정: 2018. 11.
- 인권경영현장 개정
 - 2020. 12. : 공사 새로운 미션·비전 등 반영(주거환경 개선 역할 포함)
 - 2022. 12. : 국가인권위원회 보고 지침 반영(구제절차 포함)
 - 2023. 06. : 인권 이슈의 변화 대응 및 공사 비전, 미션, 전략과제 반영
 - 2024. 01. : 인권 이슈의 변화 대응을 위한 ESG경영 실천 기관 반영
- 제정과정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참조, 초안 작성
→ 공사 인권경영위원회 검토 및 자문 → 인권경영현장 확정
- 공개방식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to various city departments like 'Citizen Services', 'Business Licensing', 'Local Government', 'Public Works', etc.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is a search bar and a link to the 'Human Rights Management Manual'.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two documents: 'Human Rights Management Manual' and 'Implementation Plan for Human Rights Management'. Both documents have a blue header and contain detailed text in Korean, likely outlining the policy's objectives and operational details.

1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및 「인권 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적용 권고 이행
- 실제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여 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 및 인권경영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실시

□ 실시계획 수립 및 이행

- 평가주관: 청렴감사팀, 각 지표별 담당자, 인권경영위원회
 - (1차) 인권영향평가 지표 담당자 자체평가
 - (2차) 청렴감사팀 답변 적정성 검토
 - (3차) 인권경영위원회 최종 심의

◦ 평가대상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기업활동 전반사항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주민에게 영향력이 큰 교통, 개발, 체육사업선정

2025년(7년차)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10개 분야】-【29개 항목】-【139개 지표】
2. 주요사업(교통, 개발, 체육) 인권영향평가	【개발】-【6개 항목】-【23개 지표】 【교통】-【5개 항목】-【24개 지표】 【체육】-【6개 항목】-【21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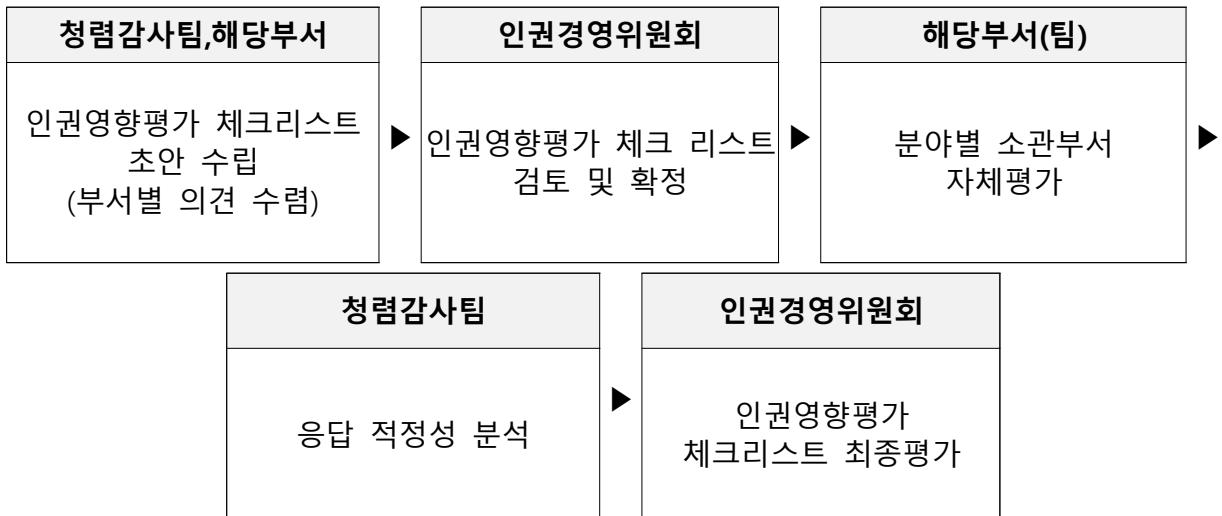
2024년부터 중대성평가 포함

◦ 인권영향평가 추진 절차

구분	담당부서(기구)	내용	추진일정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지표 설계	청렴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향, 절차 등 세부계획 마련 ■ 평가계획, 평가지표 설계 ■ 부서별 평가지표 의견수렴 	'25. 11. 7.
평가지표 확정	청렴감사팀 (검토: 인권경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평가지표 ■ 적정성 검토 및 확정 	'25. 11. 17.
평가지표 교육	청렴감사팀 지표별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별 담당자 확정 및 서면교육 	'25. 11. 21.
자체평가 실시	소관부서 (총괄: 청렴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별 담당부서 자체평가 실시 ■ 평가결과 검증(평가: 총괄팀) 	'25. 11. 21. ~12. 4.
최종평가 및 심의	인권경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신뢰성 검토 등 최종평가 ■ 권고의견 제시 및 최종심의 의결 	'25. 12. 5. ~12. 11.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청렴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타 기관 전파, 홈페이지 등 공개 	'25. 12. 18.

2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설계순서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고도화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국가인권위원회)」 상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공사 경영활동 및 사업에 맞는 고유지표 설계
- 2019년 최초 평가 이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 사업 특성에 적합하도록 지표에 대한 개선을 지속 추진
- 2025년도 평가는 2024년도 설계 지표를 기반으로 보완하여 추진
 - 지표수정기준:** 외부적 이슈(ESG경영확대, 대규모개인정보유출)와 내부적 이슈(중대재해사고예방, 체육시설 인근주민 불편민원 지속제기 등) 반영
 - 지표수정사항(14):** 추가(2), 수정(6), 삭제(3), 담당부서수정(3), 항목세분화 등

□ 2025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기관운영 평가지표 【10개 분야】-【29개 항목】-【139개 지표】

No	분야(항목수-지표수)	No	분야(항목수-지표수)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5-30)	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2-7)
②	고용상의 비차별(3-14)	⑦	현지주민의 인권보호(2-9)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3-14)	⑧	환경권 보장(4-16)
④	강제 노동의 금지(2-12)	⑨	고객인권보호(2-8)
⑤	산업안전 보장(4-19)	⑩	정보인권보호(2-10)

◦ 주요사업 평가지표: 【교통사업분야】-【5개 항목】-【24개 지표】

No	평가항목(지표수)	주요내용
①	공정 운영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권리 침해 방지 / 취약계층 접근 장치·매뉴얼 마련 / 사업자 선정 시 정보공개
②	사회적 약자 및 고객 이용 편의 보장 ⁽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마련 / 사회적 약자 배려 정보 안내 /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 시설 및 시스템 정기 점검 /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처리
③	안전보장 ⁽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안전관리 / 비상탈출구 장애물 관리 / 안전사고 보상·구제 절차 / 안전사고 대비 점검·훈련 실시 / 안전 장구 및 시설 점검
④	고객 인권 보호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열람 가능 / 촬영 기구 및 녹화물 관리 / 수집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
⑤	환경보장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에 미치는 요인 / 친환경 재료 사용 및 에너지 절약 / 친환경 운행지침 준수
⑥	근로자 인권 보호 ⁽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근무자 휴게시간·시설 보장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인권침해 구제 절차 운영 / 현장근로자 정기적 교육 / 특수건강검진 지원

◦ 주요사업 평가지표: 【개발사업분야】-【6개 항목】-【23개 지표】

No	평가항목(지표수)	주요내용
①	개발계획 수립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 선주민의 이주대책 수립 / 사업설명회 개최 사전 공고
②	용지취득 및 보상 ⁽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보상협의 수행 / 보상관련 협의절차 보장 / 보상물건의 객관적 선정/ 투명·공정한 보상금액 산정 / 지체 없는 보상금 지급
③	택지조성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전조사 / 대체시설 마련 / 인근주민 환경 피해최소화
④	보건·안전 등 현장근로여건 ⁽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관리체계 운영 / 안전교육 정기적 실시 / 보호장비 지급 및 관리대장 운영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 임금체불 방지 노력
⑤	환경권 보장 ⁽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실시 / 환경훼손 가능성 검토 / 부정적 환경요인 해소 노력 / 사업지구 내 문화적 가치 검토
⑥	권리구제 절차 보장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 관련 구제절차 보장 / 현장노동자 권리구제 방안 마련 / 인권침해 구제 절차 운영

◦ 주요사업 평가지표: 【체육사업분야】-【5개 항목】-【21개 지표】

No	평가항목(지표수)	주요내용
①	공정 운영 ⁽⁴⁾	• 선발절차 및 방법 / 취약계층 등등한 신청 기회 제공 / 환불 규정 마련 / 사업자 선정 시 정보공개
②	근로자 인권 ⁽³⁾	• 스트레스 치료 프로그램 운영 / 강사 고충 정기적 모니터링 / 고충 발생 시 조치·규정 마련
③	이용자 인권 ⁽⁴⁾	• 재해 예방 조치 / 사회적 약자 이동권·이용권 보장 / 편의 시설물 운영 /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처리
④	안전보장 ⁽⁵⁾	• 안전·위생 정기교육 실시 / 비상탈출구 장애물 관리 / 안전사고 보상·구제 절차 / 안전사고 대비 점검·훈련 실시 / 안전 장구 및 시설 점검
⑤	지역주민 환경보장 ⁽²⁾	• 주민생활 피해 최소화 / 친환경 재료 사용 및 에너지 절약
⑥	개인정보 보호 ⁽³⁾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폐기절차 / 촬영 기구 및 녹화물 관리

□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 2025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완료: 2025. 12월 보고 완료
- 위원회별 평가분야: 검증력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내·외부 위원 교차 평가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98.1점** / 100점 (※ 전년 대비 1.5점 감소)

번호	분야	항목	평가(점)		
			2025년	2024년	비고
결과	총 138개 지표		98.1	99.6	↓ 1.5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30	98.3	100	↓ 1.7
2	고용상의 비차별	14	96.4	96.4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	100	100	-
4	강제 노동의 금지	12	100	100	-
5	산업안전 보장	19	94.7	100	↓ 5.3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	100	100	-
7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9	100	100	-
8	환경권 보장	15	96.6	100	↓ .3.4
9	고객인권보호	8	100	100	-
10	정보인권보호	10	100	100	-

◦ 주요[교통]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100점 / 97.8점 (※ 전년 대비 2.2점 증가)

번호	분야	지표	평가(점)		
			2025년	2024년	비고
결과	총 24개 지표		100	97.8	↑ 2.2
1	공정 운영	3	100	100.0	-
2	사회적 약자 및 고객 이용 편의 보장	5	100	100.0	-
3	안전보장	5	100	100.0	-
4	고객 인권 보호	3	100	90.0	항목분할
5	환경보장	3	100		
6	근로자 인권 보호	5	100	100.0	-

◦ 주요[개발]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97.8점 / 95.8점 (※ 전년 대비 2.0점 증가)

번호	분야	지표	평가(점)		
			2025년	2024년	증감
결과	총 24개 지표		97.8	95.8	↑ 2.0
1	개발계획 수립	3	100	100.0	-
2	용지취득 및 보상	5	90	100.0	↓ 10
3	택지조성	3	100	100.0	-
4	보건·안전 등 현장근로여건	5	100	100.0	-
5	환경권 보장	4	100	100.0	-
6	권리구제 절차 보장	3	100	75.0	↑ 25.0

◦ 주요[체육]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97.5점 (※ 전년대비 0.1점 증가)

번호	분야	지표	평가(점)		
			2025년	2024년	증감
결과	총 21개 지표		97.6	97.5	↑ 0.1
1	공정 운영	4	100.0	100.0	-
2	근로자 인권	3	100.0	100.0	-
3	이용자 인권	4	100.0	100.0	-
4	안전보장	5	90.0	90.0	-
5	지역주민 환경보장	2	100.0	100.0	항목분할
6	개인정보 보호	3	100.0		

□ 주요 인권이슈 도출(중대성 평가)

- 주요 인권경영 이슈 선정 방법
 - 이행수준:** 인권영향평가 지표 이행률을 계산하여 1~5점 차등 부여
 - 영향심각도:** 사업성과에 영향도, 필요한 사업관리 및 재정 손실 수준, 법 위반에 의한 영향 수준,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1~5점 차등 부여
 - 발생가능성:** 과거 발생 빈도, 현재나 미래 발생 가능 유무 등 평가하여 1~5점 차등 부여

총 점	15~11점	총점 6~10점	총점 5~3점
평가 결과	상	중	하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견된 인권리스크에 한정하여 중대성평가 실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No	분야	항목	점수	평가결과		
				이행 수준	영향 심각도	발생 가능성
1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1. 인권존중 정책선언	4	1	2	1
2	2. 고용상의 비차별	2-1. 고용상 비차별	5	1	2	2
3	5. 산업안전 보장	5-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8	2	3	3
4	8. 환경권 보장	8-2.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7	2	3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No	분야	항목	점수	평가결과		
				이행 수준	영향 심각도	발생 가능성
1	(개발)2. 용지취득 및 보상	2-②. 보상관련 협의절차 보장	6	2	2	2
2	(체육)4. 안전보장	4-①. 위험지역 안전장치 구비	8	2	3	3

- 개선과제 도출: 총6건 중 주요인권이슈 2건

<2025년 인권영향평가 주요인권이슈>

분야	항목	추진목표	개선계획
기관 운영	5. 산업안전 보장	• 도급 및 영세업체들까지 포함한 보호	• 도급업체 안전보건 협의체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정
체육	4. 안전보장	•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안전확보	• 위험지역 전수조사 후 추가조치 예정

□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및 결과: 6건(5건 조치완료, 1건 보류)

구분	분야	개선과제	조치결과
기관 운영	2-1. 고용상 비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 중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하여 규정 개정 	보 류*
	5-1. 작업장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맞춤형 교육 및 작업 매뉴얼 도입 	조치 완료
	7-2. 지역주민의 지적 재산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대상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 및 토론 진행(독서동 아리 독서 주제 선정) 	조치 완료
교통	4. 고객 인권 보호 및 환경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촬영기구 및 녹화물 관리 관련 매뉴얼 수립 	조치 완료
개발	6. 권리구제 절차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기별 정기 안전·보건 점검 시 노동자 인권 모니터링 실시 	조치 완료
체육	4. 안전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구 동선 내 적치물 점검 및 제거 	조치 완료

* (기관운영) 2-1. 고용상 비차별 : 대규모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으로, 市 예산협의 및 관련예산 확보 후 관련규정 개정 후 추진 예정

□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최종 인권 리스크 도출: 총 6건

*주요인권이슈

분야	항목	추진목표	개선계획
기관 운영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선언헌장 내용 적정성 주기적인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헌장 피해자보호조치 내용 추가
	2. 고용상의 비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 차별 진단 개선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 개선지속) 임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 중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하여 규정 개정
	5. 산업안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급 및 영세업체들까지 포함한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급업체 안전보건 협의체운영을 위한 매뉴얼 재·개정
	8. 환경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리스크를 사전에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컨설턴트 양성 확대
개발	2. 용지취득 및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보상 안내 이후에도 추가적인 보상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락을 요한다” 내용을 통해 추가적인 협의보상을 제공할 예정
체육	4. 안전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안전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지역 전수조사 후 추가조치 예정

※ 개선과제는 인권영향평가 및 중대성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과제로 2026년 공사 인권경영 기본 계획 수립 시 반영 및 공사·부서별 주요 인권 이슈로 선정하여 우선 해결

1

인권침해 구제절차

□ 운영근거: 공사 「인권경영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 공사 「인권경영규정」 제6장 인권침해 구제절차 방법 등 명시
 - 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및 접수방법, 처리절차, 신고인의 신분보장 등 규정

□ 인권침해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구분	신고방법
인권침해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신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직원, 고객, 지역주민, 협력업체 등 규정상 이해관계자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홈페이지 인권경영 카테고리 내 「인권침해 신고」 ◦ 익명신고 센터 케이블을 「살며시」
인권경영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문 제출 등) ◦ 온라인 신고, 전화, 대면상담 등 * 인권상담원: 인권경영 담당자 및 청렴감사팀장

□ 처리절차

구제절차	처리내용
STEP1 인권침해 여부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여부 상담 ◦ 인권침해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 후 처리
STEP2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공사 홈페이지 인권경영 카테고리 내 '인권침해 신고'채널 이용 ◦ (인권경영 담당부서) 신고서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문제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신고서(붙임1) 작성 후 신고 - 신고내역 확인 및 접수 후 대장에 기록
STEP3 인권침해행위 선별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의 현행 구제절차에 부합할 경우 주관 부서에 이관하여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충사항,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 공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 이관 또는 진정·민원절차 등 안내 ◦ 조사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권경영위원회 안건 상정

구제절차	처리내용
STEP4 인권침해 사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조사 개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
STEP5 인권경영위원회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행위자에 대해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 공사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심의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인에 결과 안내) • 사안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
STEP6 시정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사실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 및 재발 방지 교육 등 조치

• 외부기관별 사법적·비사법적 절차안내

- 인권침해 행위가 구체적 사실관계(범죄 등)에 해당될 경우 내부 절차와 별도로 외부기관 등의 구제수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안내

구분	신고방법
비사법적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심판 신청 (부당해고, 차별시정 등)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 (임금체불, 기타 노동법 등)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 위반사항) • 경기도 인권센터 상담·구제신청
사법적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구조공단 상담·소송구조 • (범죄에 해당할 경우)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고발·고소·진정 • 법원 민사 소송

• 접수 및 조사

- 구제대상인이 인권침해로 확인될 경우 인권경영위원회 안건 상정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 심의결과에 따른 위반사항 조치, 결과 통보

2 구제절차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

□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 설치

담당부서 주요기능 *기획감사실(청렴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권침해 상담 및 조정인권침해 신고접수인권침해 조사 대상 선별인권경영위원회에게 신고내용 보고인권경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구제절차 논의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구제기구 주요 기능 *인권경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권침해 접수사건 조사, 심의 및 의결인권침해 행위 금지 권고,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요구사안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 신고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외부 위원 (4명)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現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前 부천시노동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 (노조추천)
	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現 경인드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前 부천시공정무역위원회 부위원장	시민활동가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現 인하대학교 경영학과(부교수)現 인하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수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現 국립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부교수)現 한국소비문화학회 총무이사	교수
내부 위원 (3명)	공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부천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당연직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	당연직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부천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장	당연직

3 구제절차에 대한 안내(홍보)

□ 신고채널 접근성 향상

- 익명신고 시스템(케이휘슬-살며시) QR 및 홍보스티커 제작 및 배부
- 갑질신고센터 및 익명신고센터 공사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 첫화면 배너설치

 <p>내가 지킨 청렴의식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p> <p>당신의 소중한 제보가 청렴한 부천도시공사를 만듭니다.</p> <p>신고 대상 부정 부패 행위, 갑질 피해 신고, 민사·재용비리, 부당이득 수수행위</p> <p>[PC버전] [MID 환경 버전] [모바일 앱 다운로드] [신고하기] [QR코드 스캔] [고객문의]</p> <p>독립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되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됩니다.</p>	<p>시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BEST 공기업 부천도시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p> <p>내가 지킨 청렴의식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p> <p>부패신고 갑질신고 익명신고</p> <p>고객의소리 → 시민제안 →</p>	 <p>갑질 신고 갑질신고센터 익명 신고 익명신고센터</p>
익명신고 홍보스티커	공사 홈페이지 배너	사내 인트라넷 배너

□ 공사 홈페이지 내 '인권경영' 메뉴 별도 운영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s navigation bar with links to Development, Urban Management, Traffic, Education, Environment, Customer Service, Information Disclosure, and Public Relations. A search bar at the top right includes fields for 'Search', 'Category', and 'Date'.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banner with the text '인권침해 구제절차' (Human Rights Violation Complaint Mechanism) and '시민이 신뢰하는 지속 가능한 BEST 공기업'. Below the banner, there are tabs for '정보마당', '인권경영', and '인권침해 구제절차'.

A large blue button labeled '인권침해 구제절차' is prominently displayed, along with a 'Report' button.

● 인권침해 구제절차

부천도시공사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고객, 협력사, 지역주민 등)의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구제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flowchart illustrates the complaint process:

```

graph TD
    A[신고인의 신분보장] --> B[내외부 이해관계자]
    B --> C[인권경영 담당부서 신고  
(성별감사팀)]
    C --> D[인권침해 여부 상담  
인권침해 신고 접수]
    D --> E[신고사항 분류 및 이관]
    E --> F[사건의 조사  
<위원회 조사가 적합한 사건>]
    F --> G[위원회의 결정  
<권고, 징계요구 관계기관에 신고>]
    G --> H[시정과 조치]
    
```

On the left, boxes indicate the '인권경영 담당부서' (Human Rights Management Department) and '인권경영 위원회' (Human Rights Management Committee).

On the right, the process branches into two paths based on the nature of the violation:

- 외부 (External):**
 - 비사법적 절차: 지방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인권센터
 - 사법적 절차: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법률구조공단
- 내부 (Internal):**
 - 인권침해 전반: 인권경영 담당부서
 - 성희롱·성폭력: 고총상담창구
 - 갑질피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괴롭힘 담당부서

□ 인권침해 모의신고 결과 및 전사공유

- 일 시: 2025. 6. 23.(화) ~ 2025. 7. 4.(금)
- 참여대상: 인권지킴이 8명
- 내 용: 인권침해 유형에 해당하는 가상 사례 제출
 - 신고내용

구 분	계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기타
신고건수	8건 (100%)	2건 (25%)	3건 (37.5%)	2건 (25%)	1건 (12.5%)

- 신고방법: 이메일(6건), 방문(1건), 게시판(1건)
- 결과공유
 - 7월 상호존중의 날 팝업컨텐츠로 전사공유
 - 인권지킴이 독서토론회 신고서 검토



4 진정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 인권경영규정 내 신고인의 신분보장 명시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위원회 위원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그 사실을 타인에게 암시하거나 널리 알려서는 아니 된다.
-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익명신고시스템(살며시) 도입·운영: 2024. 10. 10.

- 추진사유: 익명내부신고 활성화 유도하여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
- 신고대상: 부정·부패행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갑질피해신고 등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Bujeondosikgosa (살며시) system. At the top left is the logo 'Best' with the text '부천도시공사 (살며시)' and 'Bujeon, Environment, Social, Transparency'. At the top right is a language selection dropdown set to '한국어'. The main title '부천도시공사 익명신고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s displayed prominently in the center. Below the title, a subtext states: '부천도시공사는 케이워슬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o the right of the text is a large, glowing blue hexagonal graphic containing a white padlock icon, symbolizing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are four small thumbnail images representing different reporting categories: '윤리경영체계' (Ethics and Management System), '임직원 반부패·청렴서약서'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Declaration Letter for Employees), '신고하기' (Report), and '결과확인' (Check Results).

5 2025년 구제절차의 운영성과

□ 공사 홈페이지 갑질신고/인권침해 신고 채널

신고 채널	갑질신고센터	인권침해신고채널
	<p>갑질신고</p>  <p>공사 임직원에 대한 업무처리 시 부당한 요구, 특히 요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인격모독 등 갑질행위 신고를 받습니다.</p> <p>신고하기 ></p>	<p>인권침해 신고</p>  <p>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신고를 받습니다.</p> <p>신고하기 ></p>
접수	5건	0건
처리	5건	0건

□ 온라인 익명신고시스템(케이휘슬-살며시)

신고유형	소계	부정·부패	인사·채용	갑질피해	부당이득	기타
접수	12건	2건	1건	2건	3건	4건
처리	10건	2건	1건	2건	1건 (2건 처리중)*	4건 (요건미충족)

*현재 자체감사 진행 중인 사건

V

인권경영 교육 관련 보고

1

인권경영 규정 및 전담부서, 담당자

□ 인권경영규정 내 인권교육 명시

제16조(인권교육)

- ① 공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인권경영 교육 전담부서: 경영지원부 인사팀 교육담당자

□ 인권경영 담당자: 기획감사실 청렴감사팀 인권경영 담당자 지정

2 인권경영 교육 운영 성과

□ 인권교육 주제 선정과정

- 인권경영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전 임직원의 이해도 및 관심 제고 필요성**을 고려하여 주제선정
- 상반기 실시한 인권현황 실태점검 전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한 신고 및 익명의 고충처리 시스템 활성화를 주요 개선과제로 도출**하고 관련 교육주제로 선정
- 공사에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별 업무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인권침해 사례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 주제 선정**

□ 인권침해 방지 교육 추진 실적 *중복이수포함

구분	인권교육	인권관련 활동	4대폭력 예방	갑질과롭힘 방지	인식개선
내용	인권의식 확립	특화교육 등	성희롱·성폭력 등	갑질예방	장애인 인식 등
실적	622명	46명	600/620/580/581명	509명	541명

인권의식 확립을 위한 인권경영 교육

- 교육명: 전직원 인권경영 교육
 - 1. 인권경영 길라잡이 2. 인권공부 첫걸음
- 교육일: 2025년 상시 학습
- 이수인원: 총 589명(**전임직원 98% 이수**)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및 부서별 자체 집합교육
- 교육내용
 - 인권경영 길라잡이: 인권경영의 이해 및 체계구축, 인권영향평가 등
 - 인권공부 첫걸음: 인권일반론,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기초지식



- 교육명: 관리자 직급 및 승진자 대상 인권사례 교육
- 교육일: 2025. 11. 3.
- 이수인원: 33명(**사장, 임원포함 70%이수**)
- 교육방법: 외부 전문강사 집체교육
- 교육내용: 인권경영에 대한 이해와 공사사업 중 인권침해 발생 가능 사례 탐구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화교육 실시

- ▶ 활동명: 법무부 교정 전문기관 참관
- ▶ 활동일: 2025. 05. 29.
- ▶ 활동장소: 인천구치소
- ▶ 활동인원: 14명 (인권경영실천협의체, 감사협의체)
- ▶ 활동내용: 교정시설 홍보영상 시청, 질의응답, 교정시설 참관



- ▶ 활동명: 민·관 합동 프로그램
- ▶ 활동일: 2025. 09. 29.
- ▶ 활동장소: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 ▶ 활동인원: 19명 (인권경영실천협의체 및 청렴협약기관, 시민감사관 등)
- ▶ 활동내용: 교정시설 참관, 인권·청렴권 등 도서 50권 기증식



인권경영 담당자 집중 교육 및 모의신고 활동 전개

- ▶ 교육명: 독서동아리 「안다미로」 인권독서토론회
- ▶ 교육일: 2025. 1. 31.
- ▶ 이수인원 및 교육방법: 5명 / 집합교육
- ▶ 교육내용: 지적재산권의 이해, 보호 중요성, 침해사례, 영상 시청(지적재산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



- ▶ 교육명: 인권침해 모의신고
- ▶ 교육일: 2025. 6. 23.~ 7. 4. (7일간)
- ▶ 참여대상: 부서별 인권지킴이 8명
- ▶ 신고방법: 방문, 이메일, 인권침해게시판 등
- ▶ 신고결과:

구 분	계	인권침해	이관		기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신고건수	8건 (100%)	2건 (25%)	3건 (37.5%)	2건 (25%)	1건 (12.5%)

**어로 꼬중하지 않는
픽팡앵활은 NO**

2025 인권침해 모의신고 사례 中

X

업무지시 과정 중
"생각이 오면 하라", "다리는 창식이나" 등의 발언
=>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X

특정 지역 출신의 이유로
미팅, 주간업무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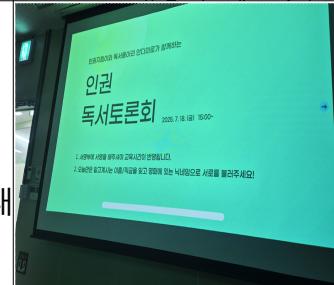
X

점심시간 사내 휴게 공간에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
"개인 신념을 이유로 휴게공간 사용금지" 험지는
=> 개인의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존경 고민 말하고
털어놓을 곳 많아...

인권침해 신고

- ▶ 교육명: 인권지킴이&독서동아리「안다미로」 인권독서토론회
- ▶ 교육일: 2025. 7. 18.
- ▶ 이수인원 및 교육방법: 9명 / 집합교육
- ▶ 교육내용: 「직장 갑질에서 살아남기」 감상평 공유, 직장 내
괴롭힘 밸런스게임, 인권경영 동영상 시청 등



직장 내 4대폭력 예방 교육

- ▶ 교육명: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 교육일: (1차) 2025. 3. 24. / (2차) 2025. 4. 2
(3차) 2025. 4. 3. / (4차, 고위직대상) 2025. 4. 7.
- ▶ 이수인원: 600명(성희롱), 620명(성폭력)
- ▶ 교육방법: 외부 전문강사 집체교육 및 온라인
- ▶ 교육내용: 성희롱, 성폭력 예방 관련 법령 이해
2차 피해,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 예방

일상의 평등 ON,

성희롱 예방교육



- ▶ 교육명: 전직원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 교육일: 2025. 12. 3.
- ▶ 이수인원: 580명(성매매), 581명(가정폭력)
- ▶ 교육방법: 외부 전문강사 집체교육 및 온라인
- ▶ 교육내용: 성매매·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 이해,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등



아동·장애인 인권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일터 마련

- ▶ 교육명: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 ▶ 교육일: 2025. 10. 20.
- ▶ 이수인원: 541명(기관장, 임직원 참여)
- ▶ 교육방법: 외부 전문강사 집체교육 및 온라인 교육
- ▶ 교육내용: 장애의 정의와 유형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이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등
- ▶ 교육명: 아동·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장애인 학대 예방교육
- ▶ 교육기간: 2025. 8. 7. ~ 9. 5.
- ▶ 이수인원: 총 516명
- ▶ 교육방법: 부서별 자체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 ▶ 교육내용: 아동·장애인 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주요 사례,
아동·장애인 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갑질) 예방 교육

- 교육명: 직장 내 괴롭힘(갑질) 예방 교육
- 교육기간: 2024. 10. 7. ~ 11. 30.
- 이수인원: 509명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 교육내용: 갑질의 유형 및 유형별 사례, 갑질 예방 실천 방안 등



□ 감정노동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직원 인권 보호

감정노동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 공사-일쉼지원센터 업무협약(MOU) 체결(2023. 3. 21.)
- 임직원 건강증진, 심리상담, 인적·물적 지원 협력
- 감정노동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2025. 04. 17. 캘리드로잉 (12명)
 - 2025. 06. 19. 운동처방 (11명)
 - 2025. 08. 14. 원예테라피 (11명)
 - 2025. 10. 16. 소도구 필라테스 (7명)



감정노동 존중 캠페인

- 부천다움 포럼 및 기념식
 - 기간: 2025. 10. 14.
 - 내용: 감정노동 관련 토론 및 감정노동자 존중시민감사장 전달
- 감정노동 캠페인
 - 기간: 2025. 10. 21.
 - 내용: 감정노동자 존중 피켓 홍보 및 물품 배포
- 감정노동존중 주간 지정
 - 기간: 2025. 10. 15.
 - 내용: 감정노동 인식개선 홍보물 게시



1

인권경영 전체과정(성과) 종합적 평가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준용,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최종 보고 완료
-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 준용,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 작성
- 인권경영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부서별 인권지킴이 활동 등 인권경영을 중요시하고 체계적 추진
-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구제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부, 익명신고시스템(살며시) 구축·운영
-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규정 및 구제절차 마련 등 인권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인권경영 실천
- 인권경영의 체계적·객관적 관리를 위하여 ‘인권경영시스템 재인증’

2

전년도에 비해 개선·강화된 인권경영체계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고도화

- 외부적 이슈(ESG경영확대, 대규모개인정보유출)와 내부적이슈(중대재해 사고예방, 체육시설 인근주민 불편민원 다수제기 등) 반영
- 추가(2), 수정(6), 삭제(3), 담당부서수정(3), 항목세분화 등 총 14문항 수정

□ 상호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구축

- 상호존중의 날 신규운영(5대 실천수칙, 인권모의신고사례공유, 인권침해 사례 공유, 힘이되는 말 공모)
- 송내체육센터 공정무역 티파티 행사,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홍보부스 등

□ 인권경영시스템 재인증

- 인권경영의 체계적·객관적 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재인증 추진
- 인권 존중문화 성숙도 평가, 내부심사, 경영검토 보고, 현장심사 등

인권친화 교육 및 홍보 강화

- 인권독서토론회 확대, 인권침해 모의신고 신규시행, 관리자 직급 대상 인권침해 사례 집합교육

인권침해 구제 절차 및 구제 매뉴얼 개정

- 인권침해 행위가 구체적 사실관계(범죄)에 해당될 경우 내부 절차와 별도로 외부기관 등의 구제수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안내

인권현황 실태점검을 위한 전 직원 설문조사 실시

- 인권 및 갑질 인식 점검, 인권침해, 구제 노력 평가 등 기존 27문항에서 구제절차 실효성 4문항 추가하여 확대
- 실태점검 설문조사 참여인원 증가(전년대비 ↑ 54명)
- 설문조사 참여인원 및 모든분야 긍정답변 증가
-인권경영전반(↑ 2.7), 인권침해구제절차(↑ 0.7), 구성원권리보장(↑ 3.5), 갑질인식(↑ 4.7)

3

외부 이해관계자에 공개된 방법

공사 홈페이지 내 ‘인권경영’ 게시판 개설하여 정보 공개

구분	게시주소(URL)	공개 정보
인권경영현장	https://www.best.or.kr/fmcs/345	인권경영현장 전문
인권경영규정	https://www.best.or.kr/fmcs/346	공사 인권경영규정(개정사항 포함)
인권경영정보	https://www.best.or.kr/fmcs/347	인권영향평가보고서, 인권존중 캠페인 추진결과 등
인권침해 구제절차	https://www.best.or.kr/fmcs/796	인권침해 유형, 신고처 등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등록

- 인권경영 성과 등을 사전정보로 등록, 정보공개포털에 공개

공문발송을 통한 인권경영 실천 사항 전파

-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인권경영 종합 보고서 등 타 공사·공단 전파

4 제3차 검증 여부, 검증기관 결과

인권경영 추진성과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및 검증

-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독립된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시 성과 보고
 - 2025년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인권경영 추진실적 보고
- 인권영향평가 관련 인권경영위원회 지표 적정성 검토, 최종 검증 및 심의
 - 검증력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내·외부 위원 교차 평가 실시
 - 인권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지표 적합성 검토(11.17.) / 최종 심의(12.05.)

한국경영인증원(KRM) 인권경영시스템 재인증(2025. 12. 05.)

- 심사기준: KMR HRMS:2024 / 조직규정: 인권경영 규정 외

구분	요구사항	인증결과
인권 존중문화 성숙도 (전직원 설문조사)	인권경영 인식 및 이행에 대한 질문 70%이상	83.0%(4.15점/5점)
인권경영시스템 적합도 (현장심사)	조직 / 리더십	부적합사항0건, 우려사항0건, 권고사항4건
	기획 / 지원	
	실행	
	성과평과	
	개선	

5 제한적으로 공개된 경우, 그 사유

인권경영 보고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공개된 경우: 해당없음

6 보고에 대한 소통 결과

2025년(2024년 실적)경영평가 '윤리경영' 지표에 포함되어 평가

- 종합평가결과: 가중치 4점 중 3.51점(평점 87.75점)
 - (잘된 점) 각 부서별 1명을 인권지킴이로 지정하고, 인권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인권경영실천협의체 합동 캠페인, 독서동아리 안다미로와 함께하는 독서토론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경영문화를 확산하였음.
 - (미흡한 점) ⇒ 2025년 인권경영활동 반영 및 개선완료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매뉴얼 기반, 공사업에 맞는 고유지표로 설계하였다고 하나, 기관운영의 경우 전년 대비

1개의 지표를 삭제하여 변화가 미미, 종합점수가 99.2점에서 99.6점 소폭 향상되었으나 인권영향평가가 실제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기관의 인권침해 구제절차 및 구제 매뉴얼(2024.02.)인권침해 행위가 구체적 사실관계(범죄)에 해당 될 경우 외부기관 등의 구제수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성희롱·성폭력 등 사건처리 매뉴얼과 일관되게 내·외부 절차에 대해서 안내할 필요가 있음.

VII

행정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에 따라, 결재 완료 후 최종보고서 대외 적극 공개
 - 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전국 공사·공단 문서 발송
-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실행
 - 해당 부서 개선 추진 독려 및 이행 여부 확인, 정기 점검
- 2026년 인권경영 계획 수립 시 개선과제 반영
 - 인권경영 계획 수립 시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경영시스템 개선과제 반영. 끝.